

정 관

재단법인 유덕레미콘 장학회

재단법인 유덕레미콘 장학재단 정관

유덕레미콘 장학 재단 정관 (1996. 04. 09. 허가)
개정 정관 (1997. 05. 23. 허가)
개정 정관 (1999. 02. 09. 허가)
개정 정관 (2000. 01. 27. 허가)
개정 정관 (2000. 04. 03. 허가)
개정 정관 (2003. 04. 17. 허가)
개정 정관 (2004. 12. 08. 허가)
개정 정관 (2005. 06. 03. 허가)
개정 정관 (2005. 12. 16. 허가)
개정 정관 (2006. 12. 28. 허가)
개정 정관 (2008. 01. 15. 허가)
개정 정관 (2008. 03. 05. 허가)
개정 정관 (2009. 12. 28. 허가)
개정 정관 (2011. 01. 06. 허가)
개정 정관 (2011. 12. 30. 허가)
개정 정관 (2012. 12. 18. 허가)
개정 정관 (2013. 12. 26. 허가)
개정 정관 (2014. 12. 30. 허가)
개정 정관 (2015. 12. 29. 허가)
개정 정관 (2016. 12. 27. 허가)
개정 정관 (2017. 12. 28. 허가)
개정 정관 (2018. 12. 26. 허가)
개정 정관 (2019. 12. 17. 허가)
개정 정관 (2020. 10. 06. 허가)
개정 정관 (2020. 12. 29. 허가)
개정 정관 (2021. 12. 29. 허가)
개정 정관 (2022. 06. 08. 허가)
개정 정관 (2023. 01. 09. 허가)
개정 정관 (2024. 01. 05. 허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 춘천시에 거주하는 불우 중학생의 학자금 및 생활 보조금 지원을 위한 장학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 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유덕레미콘 장학회”라 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49-3에 둔다.

제 4 조 (사 업) 이 법인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행한다.

1. 장학 사업

제 5 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의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 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춘천시에 거주하는 불우 중학생의 학자금 및 생활 보조금 지원에만 사용한다.

제 2 장 재 산 과 회 계

제 6 조 (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 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 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 재산을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 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 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편입 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 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 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 재산은 별지 목록 2와 같다.

제 7 조 (재산의 관리) ① 제 6조 제 3 항의 기본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관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의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 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 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8 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 9 조 (경비에 조달 방법)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 재산의 과실로써 조달한다.

제 10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 사업회계와 수익 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 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 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 2항의 경우에 목적 사업회계와 수익 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 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 11조 (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성과의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 한다.

제 12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13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 차입 금액의 총액이 기본 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이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일 때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제 14조 (임원의 보수제한등) 이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 15조 (임원등에 대한 재산 대여 금지)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법인인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의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② 제1항 각호의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 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이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5명 (이사장 포함)
2. 감사 2명

제 17조 (이사의 업무) 이 법인의 이사의 업무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8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단, 최초 임원의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 19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 20조 (임원선임의 제안)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 정분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 21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 22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의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상임감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 23조 (이사장의 직무 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을 이사회에서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의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24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사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서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일
6.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 4 장 이 사 회

제 25조 (이사회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6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 27조 (의결제척의 사유) 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가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28조 (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수시 개최한다.

제 29조 (이사회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0조 (이사회회의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의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 하여야 한다.

제 31조 (서면결의의 금지) 이사회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5 장 부 칙

제 32조 (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3조 (법인의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4조 (잔여재산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강원도 교육청에 귀속 한다.

제 35조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당 장학회는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매년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체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개한다.

제 36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 37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강원도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제 38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의 임기는 별지3과 같다.

부 칙 (1996. 04. 09. 허가)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05. 23. 허가)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02. 09. 허가)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01. 27. 허가)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04. 03. 허가)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04. 17. 허가)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2. 08. 허가)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06. 03. 허가)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2. 16. 허가)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28. 허가)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01. 15. 허가)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03. 05. 허가)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2. 26. 허가)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2. 28. 허가)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01. 06. 허가)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2. 30. 허가)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2. 18. 허가)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2. 26. 허가)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30. 허가)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2. 29. 허가)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2. 27. 허가)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2. 28. 허가)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26. 허가)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2. 17. 허가)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0. 06. 허가)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2. 29. 허가)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2. 29. 허가)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06. 08. 허가)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01. 09. 허가)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01. 05. 허가)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별지1호)

설립당시 기본재산 목록

단위 : 원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동 산	현 금	100,000,000	춘천상호 신용금고 정기예금

(별지2호)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단위 : 원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채 권	3	1,000,000,000	IBK기업은행춘천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단위 : 원

재 산 명	수량 또는 물건의표시	평 가 액	예치 기관명
채 권	126-098433-21-002(004)	850,000,000	IBK기업은행춘천
	126-098433-21-002(005)	50,000,000	
	126-098433-21-002(006)	100,000,000	
합 계	3건	1,000,000,000	

(별지3호)

설립 당 초 임 원 명 부

직 위	성 명	주 소	임 기
이 사 장	이 광 영	춘천시 후평2동 주공A 308동 404호	4
이 사	안 상 직	춘천시 후평3동 동아A 101동 1106호	4
"	민 경 수	춘천시 은의동 보배A 101동 1002호	2
"	김 이 달	춘천시 운교동 174 - 2	2
"	김 경 수	춘천시 퇴계동 945 금호A 203동 1406호	2
감 사	지 규 현	춘천시 후평3동 현대3차A 303동 805호	1
"	김 남 형	춘천시 후평3동 866 금호빌리지 9동 202호	2